

# 학 칙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4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'시행령'이라 한다) 제9조에 의거 영훈국제중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3.02.14. 개정>

**제2조(교육목표)**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국제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.

## 제2장 명칭 및 위치

**제3조(명칭)** 본교는 영훈국제중학교라 한다.

**제4조(위치)** 본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에 둔다.

## 제3장 수업연한·학년·학기 및 휴업일

**제5조(수업연한)**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

**제6조(학년 및 학기)**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.  
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 
③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하고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7조(휴업일)**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
  2. 개교기념일(3월 27일)
  3. 여름 휴가
  4. 겨울 휴가
  5. 학년말 휴가
  6. 재량휴업일
- ②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 <2023.02.14. 개정>
-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,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-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4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

**제8조(학급편제)** 본교의 학급 수는 각 학년 5학급씩(남녀 혼성 학급) 총 15학급으로 한다.

**제9조(학생정원)** ①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32명씩 총 480명으로 한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입학 및 전·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
2. 본교 특례귀국자 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자

## 제5장 입학·유예·면제

**제10조(입학자격)**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
2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
3. 해외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로서 국내외 수학 연한이 6년 이상인 자
4. 기타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1조(입학방법)**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.

**제12조(서약서)** 본교에 입학(전입학 및 재취학 포함)을 허가 받은 자는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학습 동의 서약서 등 제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)** ①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

②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4조(유예자 등의 학적관리)**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

**제15조(보호자)** ① 본교 재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로 한다. 단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자를 보호자로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②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전입학 및 재취학·휴학·복학·전출

**제16조(전입학 및 재취학)** 본교로의 전입학 및 재취학(귀국학생 포함)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.

**제17조(휴학)**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 
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 
③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.

**제18조(복학)** ① 제17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.  
②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9조(전출)** 학생이 타교로 전학을 하려 할 때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7장 교육과정·수업일수·교사

**제20조(교육과정)**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「교육과정 편성·운영지침」을 바탕으로 본교의 국제특성화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편성·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**심의를**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 <2023.02.14. 개정>

**제21조(교육과정위원회)**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  
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  
1.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 
2. 국제중학교로서 특성화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방향 제시  
3. 국내외 체험학습의 운영 및 인정에 관한 내용  
4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제반 내용 심의 등  
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 
⑤ 위원은 본교 교사,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 
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22조(수업일수)**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 
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의 실시, 「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」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.

**제23조(수업시각)** ① 본교의 수업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은 **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.**

<2023.02.14. 개정>

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24조(교사·학업성적 평가)**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.  
② 각 교과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 
③ 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학업성적관리규정」으로 정한다.

## 제8장 수료·졸업·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

**제25조(과정 수료의 인정 및 졸업)** ① 학교장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  
②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22조의 1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  
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**제26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**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(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 
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,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.  
③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.  
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.  
⑤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.  
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「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규정」으로 정한다.

**제27조(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)** ①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.  
②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1.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
2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
3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
4.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
5.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
③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⑤ 위원은 본교 교원,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9장 체험학습

### 제28조(교외체험학습) 삭제

## 제10장 포상·징계

- 제29조(포상)** ① 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학생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  - ③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학생포상규정」으로 정한다.

- 제30조(학생포상심의위원회)** ① 학교장은 학생포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.
- ② 학생포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학생포상심의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
    2. 학생포상에 대한 제반사항의 심의·의결
    3. 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 대상자 추천
    4. 그 밖의 학생포상 관련 업무
  - ③ 학생포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-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제31조(징계)**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1. 학교 내의 봉사
  2. 사회봉사
  3. 특별교육 이수
  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-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- ④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학생생활규정」으로 정한다.

- 제32조(생활교육위원회)** ① 학생의 징계 사항을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

-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, 학생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.
-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2023.02.14. 개정>

- 제33조(학교폭력전담기구)**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    1.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
    2.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
    3.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
    4.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및 분쟁 조정
    5.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
  - ③ 학교의 장은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,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.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④ 학부모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
  - ⑤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규정」으로 정한다. <2023.02.14. 개정>

- 제34조(징계의외 지도 등)**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·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.
1. 구두주의
  2. 격리조치
  3. 상담지도
  4. 특별과제부여
-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학생생활규정」으로 정한다.

- 제34조의2(학업중단예방)** ① 학교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학업연장을 돕기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둔다.
-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생이 학업중단에 관해 충분히 숙려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. <2023.02.14. 추가>

## 제11장 학생회

- 제35조(학생활동지원)** 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·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.

- 제36조(학생회)** ① 본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.

② 학생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  2. 부회장 2명 (남여 각 1명씩)
  3.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명
- ③ 학생회에는 대의원회와 분야별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둔다.
- ④ 학생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1.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
  2. 학교 행사의 기획·운영에 관한 활동
  3.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
  4.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
  5.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
  6.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관한 활동
  7. 학교 전통의 정립,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
  8. 각종 봉사 활동
  9.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
- ⑤ 학생회 조직,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학생생활규정」으로 정한다.

<2023.02.14. 개정>

## 제12장 수업료 및 입학금

**제37조(수업료 징수 등)** ① 본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자율화되어 있다.

- ② 본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는 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를 참고하여, 학교운영위원회의 **심의**를 거쳐 결정한다.
- ③ 수익자부담경비(급식비, 현장학습비 등)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**심의**를 거쳐 징수한다. <2023.02.14. 개정>

**제37조 2(미납자 조치)** ① 등록금의 납입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,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납부기일을 정한다.
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가 등록금의 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징수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등록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납부할 금액, 납부기일, 예고된 납부기일까지 연체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또는 전학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촉서를 학생의 부모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위 항에 기재된 독촉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납부기일까지 미납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또는 전학요구를 할 수 있다.

## 제13장 학칙 및 학교규정 제·개정

**제38조(학칙 개정)**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.

- ②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, 이사회,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,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.
-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

조사, 학생회대의원회의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.

1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(**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**)
  2.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  3. 학칙개정절차
  - ④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, 주요내용,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20일 내외의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⑤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⑥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·공포한다.
- <2023.02.14. 추가>

**제39조(학교규정 제·개정절차)** ① 학교장은 학칙 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38조제1항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,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확정·공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학교생활규정」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학칙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제6조(학급수) 및 제7조(학급당 정원), 제8조(교육과정), 제17조(전편입학)는 2009학년도 2학년과 3학년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.

**제3조**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
**제4조** 이 학칙은 2013년 7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5조** 이 학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6조**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의 제반 세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7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
-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2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